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

-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(8.9~ 8.22)
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-

〈 8.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〉

* 아래 수칙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정규화하는 것으로, 실제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음

	현재 적용 중인 수칙	변경되는 수칙
종교시설	(4단계) 수용인원의 10%,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	(4단계)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,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%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(최대99명)

□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,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%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, 각종 **모임·행사**와 **식사·숙박**은 **금지**된다. (신규 적용 조치)

○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**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%,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** 중이나,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.

〈 개선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〉

구분		4단계	3단계
사적모임		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	4인까지 가능
다중이용시설	집합 금지	유흥·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게임장	-
	22시 운영제한	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PC방, 학원 등 1~3그룹 (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)	유흥시설, 홀덤펍·홀덤게임장, 콜라텍·무도장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목욕장업, 수영장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행사 집회		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	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
스포츠 관람		무관중 경기	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, (실외) 수용인원의 30%
종교활동		수용인원의 10%, 최대 99명까지 허용,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	수용인원의 20%,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, 실외 행사 50인 미만

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&A

14 종교시설

Q1.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?

○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

Q2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?

○ **일정한 시간과 장소**에서 **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하**에 행해지는 **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**를 말함

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
- **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** 모든 단계에서 **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** 및 **성가대 운영*** 및 **모임**도 **금지**

* 성가대·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

Q3. 정규 종교활동(미사·법회·예배·시일식 등)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?

○ **단계별 참여인원*** 기준에 따라, **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****하여** 참여

* 1단계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, 2단계 30%(두 칸 띄우기), 3단계 20%(네 칸 띄우기), 4단계 수용인원의 10%(최대 99명 이내, Q4참고)

** 예)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,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

○ 종교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**좌석** 또는 **바닥면**에는 **거리두기 지점**을 **표시**하여 **이용자에 안내**하여야 하며, **개별 공간**(예, 예배실 등) 및 **건물 출입구** 등에 **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** 및 **안내**

Q4.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,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?

○ 법회·미사·예배 등 종교시설의 **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%*이내(최대 99명)로 참여 가능함**

* (수용인원 10%) ▲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㎡ 당 1인으로 산정하고, ▲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, **수용인원 10%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**

※ 동일 종교시설 내 **정규 종교활동 공간(예배당, 소성당, 법당 등)이 여러 개인 경우,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% 이내(최대99명) 운영 가능**

- **다만,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(처벌)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**

○ **비대면 운영 시,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*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**

* (필수진행인력) 영상·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,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

Q5.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가능한지?

○ 종교시설 주관 **각종 대면 모임 활동** 및 **행사, 숙박, 음식 제공** 및 **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, 500명 이상 모임·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**

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

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
○ **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·행사 등이 모두 금지*됨**

- **다만, 2~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*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**로 실외행사가 가능함**

* 실외행사 시 식사·숙박 금지 / 마스크 상시 착용,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,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

** 2단계 100명 미만(99명까지 가능), 3단계 50명 미만(49명까지 가능)

Q6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?

○ **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**

- 따라서, **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**에 따라 가능함 (Q3 참고)

○ 단, **정규 종교활동을 제외**한 그 밖의 **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**

※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
Q7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(강사)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?

○ **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**하여야 함.

- 단,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

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**"방송출연"**에 해당하여 설교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에 한해 **마스크 착용 예외상황**으로 인정함

○ 종교시설의 **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(유튜브 등)** 등은 **사적 방송**에 **해당**된다고 할 수 있어, **"방송출연" 적용은 곤란**함

- 단, **사적 공간(별도의 분리된 공간)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**에는 **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**

※ '마스크 착용'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Q8.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(연합단체)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?

○ 종교시설의 **재정(회계), 시설관리** 등 **기관** 및 **단체 운영**을 위하여 **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**한 경우에 한하여

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소독, 음식섭취 금지,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, 출입자 명단관리 등 **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·행사 방역 기준**에 따라 가능함

Q9.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(장소)을 빌려서 행사(결혼식, 장례식 등)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?

○ **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·행사가 아니므로 허용**은 되나, 결혼식은 '결혼식장', 장례식은 '장례식장', 공연은 '공연장' 등 **해당 활동**을 위한 **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**하에 가능함

*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'식당' 방역수칙 적용

Q10.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·숙박이 가능한데,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?

○ 종교시설 주관 **모임·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**하는 경우에도,

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*하되

* 실·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,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큰소리로 함께 기도·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

- **식사는** 종교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**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, 식당·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**
- **숙박이** 동반되는 경우, **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**

Q11. 종교시설 내 관리자·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?

○ **종교시설의 책임자·종사자들**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

- 단, **교인,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**하는 것은 **금지 대상임**

Q12.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?

○ **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**하는 것은 가능함

Q13.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

○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**보충형 수업**의 형태 또는 **통학형**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**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**

-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,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, 소모임 등도 금지됨

* 다만, 시민단체·법인·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

Q14.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?

○ **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·공부방 등 취약계층** 대상 활동으로, **종교시설 방역수칙*을 준수**하여 예외적으로 1~4단계 운영 가능

*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, 노래·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

- **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·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**에 따라 **대상활동**으로서 인정 가능
- 다만, 아동·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, **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(수강료, 이용료 등 납부)로 운영**되는 보육활동·문화강좌 등은 **예외 적용하지 않음**

※ **교리·목회자 양성,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, 전일제 또는 유료로** 운영되는 **국제학교/대안학교(학원수칙 적용),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**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

Q15.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?

○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**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**

※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

Q16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?

○ 백신 접종자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)*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,

* **(예시)**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 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

- 접종완료자*(2차 접종 후 14일 경과)로만 구성된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하고 2m(최소 1m)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·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

*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,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

※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(**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,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**)은 **1~3단계 적용,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**

Q17. 백신 접종을 한 경우, 2~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?

○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~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

* **(예시)** 식사·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,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
→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